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 ISSN 1976-0515 | Vol. 9 | No. 32 | 2009년 9월 17일

한 · 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조 충 제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cjcho@kiep.go.kr, Tel: 3460-1025) 이 준 규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부연구위원 (junkyu@kiep.go.kr, Tel: 3460-1128) 송 영 철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원 (ycsong@kiep.go.kr, Tel: 3460-1039)

1. 체결 경위와 의의

3. 경제적 효과

2. 주요내용

4. 활용 및 대응방안

주 요 내<u>용</u>

- ▶ 한·인도 CEPA는 2006년 3월 첫 공식협상이 시작된 이후 3년 6개월 만인 2009년 8월 7일 공식서명이 완료되었음.
-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26일 한·인도 CEP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올 하반기에 국회비준이 통과되면 2010년 1월 1일부터 협정이 발효될 예정임.
- ▶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가 BRICs 국가와 맺은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 한 · 인도 CEPA를 계기로 거대 신흥개도국인 인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적 경쟁에서 우위에 설수 있게 되었음.
- 현재 일본, EU 등도 인도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 한·인도 CEPA는 △상품 △서비스 △원산지 △투자 △경 제협력 등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고 있음.
- 상품부문에서 양국은 모든 교역품목의 85% 이상에 대해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서비스부문 자유화는 DDA보다 높은 수준에서 합의되었음.
- ▶ 한·인도 CEPA가 가져올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미국, EU와 같은 선진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비교하면 상대적으 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증기에 미칠 효과는 약 0.18% 정도이며, 상품·서비스의 가격하락과 소비자 선택폭의 확대 등을 통해서 약 9억 달러의 경제적 후생 증가가 예상되고,

산업생산은 약 39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한 · 인도 CEPA로 인해 우리나라의 제조업 수출은 향후 10 년간 연평균 약 1.8억 달러, 수입은 약 3,700만 달러가 증가하여 연평균 1.4억 달러의 무역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기계, 자동차, 화학산업 순으로 수출증대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섬유산업의 경우는 수출보다 수입증대효과가 클것으로 추정됨.
- 이밖에 인도 내 은행지점의 설치 가능성이 증대함으로써 은행들의 영업기회가 확대될 것이며, 인도의 전문인력 유 입을 통해 관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 한·인도 CEPA는 우리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바,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도와의 산업기술 협력 및 인도 전문인력의 활용, 완화된 무역구제조치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CEPA 체결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거대 신흥개도국인 인도시장의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 · 인도 CEPA의 조기발효가 바람직하며, 일본 등다른 나라가 추진하는 인도와의 FTA 협상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선점효과를 활용하고 이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임.

1. 경위 및 의의

- 한·인도 CEPA는 2006년 3월 첫 공식협상이 시작된 이후 3 년 6개월 만인 2009년 8월 7일 공식서명이 완료됨.
- 총 12차례의 공식협상과 법률검토를 거쳤으며, 2009년 4~5월 인도 총선을 앞두고 2009년 2월 뉴델리에서 가서명이 이루어짐.
- 인도는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총선 전에는 주요 조약및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 관행이 있음.
- 2009년 5월 새로 출범한 인도 정부와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7일 서울에서 한·인도 CEPA에 최종서명함으로써 체결을 완료함.
- 한·인도 CEPA는 2010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임.
- 한 · 인도 CEPA는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일자에 발효되는데, 양국 정부는 2010년 1월 발효를 목표로국회비준 절차 등을 추진 중임.
- 우리정부는 지난 8월 26일 한·인도 CEP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
- 인도는 의회 비준이 필요 없으며, 이미 지난 7월 내각회의 에서 한·인도 CEPA를 승인했음.

표 1 하·이도 CEPA 추지경과 및 향호 익정

일시	내용	비고
2004.5	인도, 단기 FTA 추진 대상국으로 확정	FTA 추진 로드맵
2005.1~06.1	총 4차례 한·인도공동연구(JSG) 화의	2005.12 국내 공청회 개최
2006.1	한·인도 CEPA 협상개시 결정	대외경제장관회의
2006.3~08.9	총 12차례 공식협상 개최	2008.9 실질적 타결
2008.10~11	한·인도 CEPA 법률 검토회의	협정문안 조정 및 명료화
2009.2	한·인도 CEPA 가서명	2009.4~5 인도 총선
2009.8.7	한·인도 CEPA 공식서명	2009.7 인도 내각승인
2009.8.26	한국,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2009.하반기	국내 국회 비준동의 절차	9월~12월 정기국회
2010.1.1	발효	

자료: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종합.

■ 한·인도 CEPA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한 BRIC_S 국가와의 첫 번째 FTA로서 다른 경쟁국보다 한발 앞서 체결한 데 큰 의의가 있음.

- 인도는 1조 2,000억 달러라는 세계 12위의 GDP 규모와 더불어 세계 4위의 소비시장 규모와 세계 2위의 인구규모(약 12억)를 갖고 있는, 중국과 함께 BRICs를 대표하는 국가임.
- 인도는 또한 견고한 내수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8.4%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09년 6% 이상의 성장이 전망됨.
- 중국, 일본, EU 등 경쟁국에 비해 한발 앞선 인도와의 CEPA 체결은 인도시장 선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표 2. 인도의 주요 FTA 체결 및 추진 현황

<u>ж с.</u>		<u> </u>							
	기체결된 주요 FTA								
연도	내용	비고							
1981	인·몰디브 FTA 체결	_							
1998	인·스리랑카 FTA 체결	CEPA로의 확대를 위한 협의 중(2008년)							
2003	인·싱가포르 FTA 체결	2005년 발효							
2004	인·MERCOSUR FTA 체결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비준 동 의가 남아 있어 미발효 상태							
2004	인·SAARC* FTA 체결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데 합 의(2008년)							
2005	인 · 모리셔스	_							
2006	인·세르비아몬테그로 FTA 체결	_							
2006	인·부탄 FTA 체결	2006년 발효							
2008	인·ASEAN 협상타결	2009년 공식 서명							
2009	인·한 CEPA 체결	2010년 1월 발효 예정							
	협상 및 검토 중인	주요 FTA							
- 22	1) =1-	-1-n-n-							

<u> </u>							
협상 및 검토 중인 주요 FTA							
대상 최근 진행내용							
• 2008년 10월 10일 양국간 공동연구 종료							
• 2008년 12월 11차 협상 개최							
• 2007년 6월 양측 FTA 협상 공식 개시 • 2009년 2월과 3월 협상							
2004년 8월 경제협력을 위한 기본 협정에 공식 서명2008년 9월 제2차 협상 개최							
• 2008년 6월 CECA 제2차 협상 개최							
2012년 6월까지 완료(인도, 태국, 스리랑카)2017년 6월까지 완료(부탄, 미얀마, 네팔)							
• 2007년 7월 FTA 상품무역협상을 재개, 서비스 및 투 자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합의							
• 2007년 10월부터 공동연구 개시							
• 2009년 1월 CEPA 협상 예비협의 개시에 합의							
• 2008년 5월, 8월 공동연구 개최							

주: *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7개국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이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 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 BIMST-EC.(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

자료: 보도자료 정리.

■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미미하지만 양국의 교역규모가 특히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CEPA가 발효되면 인도의 중요성과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임.

2000년 약 20억 달러를 기록한 양국 교역규모는 2007년 112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8년에는 약 156억 달러를 기록함.

표 3. 대인도 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

	20041	2005년	200)6년	200)7년	200	8년		09년 7월
	2001	2000 1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 라	증감	금액	증감
총교역	54.8	67	91.7	36.7	112.2	22.4	155.5	38.6	63.7	-31.0
수 출	36.3	45.9	55.3	20.3	66	19.3	89.7	36.0	43.8	-14.7
수 입	18.5	21.1	36.4	72.4	46.2	27.0	65.8	42.3	19.8	-51.5
수 ス	17.8	24.8	18.9	_	19.8	_	23.9	_	24	_

자료: 주인도한국대시관.

- 지난 5년간 대인도 교역액의 평균 증가율은 약 30%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 평균 증가율 17.8%보다 크게 높은 수치임.

그림 1. 우리나라 총교역 증기율 및 대인도 교역 증기율 비교



자료: 한국무역협회; KITA net.

그림 2. 한국의 대인도 수출·수입 및 총교역 비중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KITA.net.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및 수입 비중은 2008년
 기준 각각 2.1, 1.5%로 증가하였으며, 총교역 비중 역시
 1.7%를 기록, 2000년 대비 약 2.5배 증가함.

2. 한·인도 CEPA 주요내용

가. 상품부문

- 품목수 기준으로 양국 교역품목의 85% 이상이 관세철폐 또 는 인하됨.
- 한국과 인도의 관세철폐 비중은 각각 84.7%, 74.5%이며, 관세가 50% 이상 줄어드는 품목의 비중은 한국 89.7%, 인 도 85.5%임.
- 인도 측 양허율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관세 철폐 및 인하 기간도 5~8년 또는 10년 등 장기임.
- 3년 내 품목수 기준으로 한·미 FTA의 미국 측 양허율은
 91.4%, 한·EU FTA의 EU 측 양허율은 99% 수준임.
- 이밖에 한·ASEAN FTA에서 후발 ASEAN 국가들의 경우도 비록 장기에 걸쳐 관세가 인하되지만 양허율은 90%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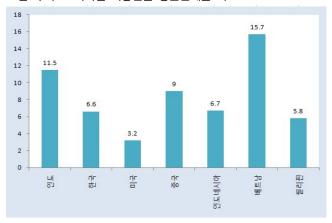
표 4. 양국 상품 양허안 내용

양허단계		인도 측 양허						
	앙어단계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관세철폐	3,739	71.5	2,984	74.5			
	즉시철폐	202	3.9	1,538	38.4			
	5년 철폐	180	3.4	560	14			
	8년 철폐	3,357	64.2	886	22.1			
8년	내 1~5%로 인하	459	8.8	342	8.5			
8/10)년 내 50% 감축*	261	5.0	96	2.4			
	양허 제외		14.7	580	14.5			
	전체 합계		100	4,001	100			
	스노크		우리 측	· 양허				
	양허단계	품목수	우리 측 비중	· 양허 수입액	비중			
	양허단계 관세철폐	품목수 9,984			비중 84.7			
			비중	수입액				
	관세철폐	9,984	비중 88.6	수입액 1,679	84.7			
	<u>관세철폐</u> 즉시철폐	9,984 6,824	비중 88.6 60.6	수입액 1,679 1,148	84.7 63			
8년	관 <mark>세철폐</mark> 즉시철폐 5년 철폐	9,984 6,824 2,310	비중 88.6 60.6 20.5	수입액 1,679 1,148 205	84.7 63 10.3			
	관세철폐 즉시철폐 5년 철폐 8년 철폐	9,984 6,824 2,310 850	비중 88.6 60.6 20.5 7.5	수입액 1,679 1,148 205 226	84.7 63 10.3 11.4			
	관세철폐 즉시철폐 5년 철폐 8년 철폐 내 1~5%로 인하	9,984 6,824 2,310 850 34	비중 88.6 60.6 20.5 7.5 0.3	수입액 1,679 1,148 205 226 3	84.7 63 10.3 11.4 0.2			

주: * 인도는 10년 내 50% 감축, 우리는 8년 내 50% 감축, 자료: 외교통상부.

- 하지만 인도는 기존 관세율이 매우 높은 편이므로, 관세 철
 폐 및 인하로 인한 효과는 장기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인도의 비농산품 평균관세율은 11.5%로 중국(9.0%), 인도네 시아(6.7%), 필리핀(5.8%) 등 보다 훨씬 높음.

그림 3. 주요 국가별 비농산품 평균관세율 비교



자료: WTO tariff data(2007).

- 상호 민감부문인 농업부문이 양허에서 대폭 제외된 반면, 우리나라의 대인도 10대 수출품 등은 인도 측 양허안에 모두포함됨.
- 한국의 대인도 10대 수출품목인 기계 및 철강 제품, 자동차 부품 등이 대인도 수출액의 40% 이상을 차지함.
- 유무선 전화기, 기타 가정용 전자제품은 즉시철폐, 자동차 부품 및 경유, 철강제품은 5~8년 내 철폐 혹은 1~5%로 감축하기로 함.
- 현재 수출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수출 잠재력이 큰 디젤엔진 및 철도용 기관차, 엘리베이터 등도 양허안에 포함됨.
- 디젤엔진 관세는 현 12.5%에서 8년 내 1~5%로 인하되고,
 철도용 기관차 관세는 현 10%에서 5년 내, 엘리베이터 관세는 현 12.5%에서 5년 내 각각 철폐될 예정임.

표 5. 대인도 주요 10대 수출품목 양허결과

<u># 5.</u>	5. 내인도 수요 10대 수술품목 양허결과								
		대역	인도 주요 수출품						
순위	품목명	인도	ዕት፰ነለኔ	2008 수출액					
	(HS 6단위)	관세율	양허안	백만 달러	비중				
1	자동차 기타 부품	12.5	8년 내 1~5%로 감축	1,131	12.6				
2	경유(제트기)	10	10년 내 50% 감축	769	8.6				
3	무선전화기	0	즉시철폐	499	5.6				
4	선박(탱커)	12.5	8년 내 철폐	430	4.8				
5	유선전화기 부품	0	즉시철폐	248	2.8				
6	철강 및 비합금강 열연강판	5	5년 내 철폐	208	2.3				
7	신 문용 지	12.5	5년 내 철폐	172	1.9				
8	철강 및 비합금강 냉연강판	5	5년 내 철폐	165	1.8				
9	기타 가정용 전자제품	12.5	즉시철폐	150	1.7				
10	선박(화물선)	12.5	8년 내 철폐	133	1.5				
소계	주요 수출품			3,780	42.1				
합계	전체 수출			8,977	100				
TI = ·	이코토사비								

자료: 외교통상부.

- 또한 협상 발효 2년 후 재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양허논의가 가능하도록 합의됨.
- 인·싱가포르 FTA의 경우 2005년 발효 이후 재협의(review)
 를 통해 2007년 말에 인도 측이 싱가포르에 275개 품목을
 추가로 양허한 바 있음.
- 향후 일·인도 CEPA 타결 시 인도 측 양허안이 한·인도 CEPA와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경우, 재협의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나. 서비스부문

- 양국 모두 현재 진행 중인 DDA협상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자유화에 합의함.
- 우리나라는 인도의 의료, 통신, 에너지유통, 운송서비스, 건설, 유통(소매 제외), 광고, 오락문화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함.
- 특히 인도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인도 내 은행지점 설치 신청과 관련하여 한·인도 CEPA 발효 후 4년 내 최대 10개까지는 우호적으로 고려(favorable consideration)하겠다는 약속에 합의함.
- 서비스 전문직의 인력이동에 대한 상호개방에 합의함.
-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통신 기술자, 영어보조교사(학원강사 제외) 등 163개 분야 전문인력의 이 동에 대해 상호 합의함.

다. 원산지

- 일반적 수준의 원산지기준을 채택하였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 서는 산업 민감도를 고려하여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도입함.
- 6단위 세번변경과 역내부가가치 비율 35%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35~50% 까지 적용함.
- 개성공단에서 가공·생산한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인정함.
- 우리나라기에 기존 체결한 모든 FTA(싱가포르, EFTA, ASEAN, 미국) 방식과 같이 개성공단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킴.

라. 투자

- 투자의 전 단계에 걸친 내국민대우(NT) 보장과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 대한 투자 개방에 합의함.
- 인도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투자 자유화에 처음으로 합의함.
- 인도의 농업, 어업, 광업 등 1차 산업부문을 제외한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가 허용됨.
- 단일브랜드 소매업에 대해서는 51%까지 외국인투자가 허용됨.
- 한·미 FTA 수준의 투자자 보호 제도가 도입됨.
- 투자자산의 수용조치 제한 및 보상, 국산부품 사용 및 기술이 전 의무 등 각종 이행의무 금지, 정부정책 변화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이 도입됨.

마. 무역구제

- 최소부과원칙(LDR), 제로잉 금지, 조사개시 전 통보 의무화 등 반덤핑제소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적극 반영됨.
- 상대적으로 낮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LDR), 덤핑마진 계산 시 일부 거래를 제외하여 높은 덤핑마진이 계산되는 것을 방지(제로잉 금지)할 수 있는 조치 등이 합의됨.

바. 경제협력

- 한·인도 양국은 기타 다양한 분이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기 로 합의함.
- 무역·투자, 정보통신, 에너지, 섬유 등 13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함.

표 6. 한 인도 CEPA 주요 경제협력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무역·투자	기업간 교류협력 및 확대를 위한 자속적인 방안 마련					
에너지	유전 및 광물 탐사, 대체에너지 및 재상에너지 개발 등 분이에 협력 강화					
정보통신	한국 하드웨어와 인도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상호 협력 강화					
중소기업	경영기술개발·이전, 품질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					
섬유	섬유산업의 기술개발 및 인력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					
기타	시청각콘텐츠, 관광, 정부조달, 과학기술 등					

자료: 외교통상부; kotra자료,

3. 경제적 효과

가. 거시경제적 효과

-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실질GDP는 단기적으로는¹⁾ 약 0.01%, 장기적으로는²⁾ 약 0.1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인도는 우리가 FTA를 체결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관세
 양허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음.
- 인도 측 양허안의 5년 내 철폐 비율은 7.3%(품목수 대비),8년 내 철폐 비율은 71.5%임.
- 우리나라의 후생은 상품·서비스의 가격하락, 소비자 선택폭 확대 등을 통하여 단기에는 약 3억 달러, 장기에는 9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표 7. 한·인도 CEPA의 거시경제적 효과

			17	A) E		
		<u>و</u>	<u></u> 국	인도		
		단기		단기	장기	
GDP	증기율(%)	0.01	0.18	0.00	0.18	
	금액(백만 달러)	36.3	778.4	-0.1	868.0	
후생변화(백만 달러)		289.1	925.5	-56.1	519.9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결과.

- 우리나라의 산업생산은 단기적으로 약 16억 달러, 장기적으로 는 약 39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단기 및 장기 효과 모두 서비스업 생산증가 효과가 제조업 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이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비중이 제조업보다 높고, 서비스 부문의 시장접근 개선에 따라 서비스의 생산 및 수출이 증 가하는 것 외에, 제조업의 생산 및 수출과 관련된 서비스 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¹⁾ 관세철폐 이행기간이 5년 이하인 품목은 완전철폐, 그 이상인 품목은 5년간 감축되는 관세인하 폭을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에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임.

^{2) 10}년까지의 관세철폐를 반영함. 한미, 한EU의 경우에는 모든 관세 가 철폐되는 것을 가정했지만, 이번에는 10년이 지나도 철폐되지 않는 부문도 있어, 이를 반영한 결과임.

표 8. 한·인도 CEPA의 산업생산 효과

(단위: 백만 달러)

(CTF TC 2-1)								
	단	7]	장기					
	한국	인도	한국	인도				
농업	75	-10	168	181				
수산업	3	-6	9	0				
제조업	564	-524	1,730	-187				
서비스업	981	2	2,030	153				
전체	1,623	-538	3,938	148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나. 산업별 효과

1) 제조업3)

- 인도의 개방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면이 있지만 인도의 높은 관세율과 수입탄력성으로 인해 인도시장에 대한 제조업 수출증대효과는 예상보다 높게 나타남.
- 수출관세 철폐의 효과로 향후 10년간 대인도 제조업 수출은 연평균 1억 7,700만 달러 증대하여, 2004~06년 평균 수출 대비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제조업 전체 수입이 연평균 3,700만 달러 증가하여(1.6%), 우리나라의 무역흑자는 매년 약 1억 4,000만 달러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 중에서는 기계(4,200만 달러), 자동차(3,000만 달러), 화학(2,300만 달러)의 순으로 수출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됨
- 기존 FTA의 경우 자동차부문의 수출증대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반면, 한·인도 CEPA의 경우 국내업체가 이미 현 지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어 이 부문의 수출증대효과는 상 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됨.
- 선진국과의 FTA 체결 시 자동차 다음으로 높은 수출증대효과가 나타났던 섬유산업도 한 · 인도 CEPA에서는 그 효과가다소 미흡할 것으로 추산됨.
- 대인도 수입의 경우 화학(800만 달러), 섬유(600만 달러), 기계(400만 달러) 순으로 증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됨.
- 3) 한인도 CEP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 연구에서 산업연구원 (KIET)이 분석한 부분을 요약, 정리함. 제조업 분야의 수출입 효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산업연구원의 eKiet 산업경제정보로 동시에 발간될 예정임.

-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는 기계(3,800만 달러), 자동차 (2,800만 달러), 화학(1,600만 달러), 전기전자(1,400만 달러) 순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섬유부문에서 유일하게 연평균 약 3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입 증가율을 기준으로 볼 때 향후 가장 활발하게 교역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자동차와 기계 부문임.

표 9. 한 · 인도 CEPA가 제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단위: 백만 달러)

	수출증가		수입	증가	무역수지		
	연평균 금액	10년 누계	연평균 금액	10년 누계	연평균 금액	10년 누계	
화학	23	233	8	75	16	158	
섬유	3	29	6	55	-3	-26	
철강	11	114	2	18	10	96	
기계	42	419	4	37	38	382	
전기전자	16	160	2	18	14	142	
자동차	30	297	2	19	28	277	
생활용품	2	19	1	13	1	6	
기타 제조업	50	503	14	136	37	367	
제조업 총계	177	1,774	37	372	140	1,401	



주: 단위는 2004~06년 평균가격. 자료: 산업연구원.

2) 서비스부문

-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확보 등으로 우리 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및 수출 제고에 기여할 전망임.
- 포지티브 방식으로 시장접근이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출이 가능한 부문은 거의 포함됨.
- 소매업이 인도의 양혀표에서 누락되었지만, 이는 인도에서 시장개방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임.
- 최혜국대우 약속 검토, 인정 장려 조항 등은 향후 추가협의

결과에 따라 개선여지가 있어 대인도 서비스수출 환경의 개선 가능성이 있음.

- 은행지점 설치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 가능성은 인도 내 우리 나라 은행의 영업경쟁력 및 효율성 제고에 잠재적으로 기여할 전망임.
- 인도 정부가 지금까지 외국계은행에 대해 통상 연간 2개 이 상의 지점설치를 허가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진입기회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 현재 우리나라 은행은 2곳에서 지점영업을 하고 있으며, 최 근 여러 은행들이 인도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일부 선 도 외국계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외국계은행 인도 지 점 수는 아직 10개 미만임.

표 10. 인도 진출 외국계은행의 지점설치 현황

	"LO 1	122 1 20	(단위: 개)
은행	지점수	은행	지점수
Standard Chartered	90	Bank of America	5
HSBC	47	Caylon Bank	5
Citibank	39	Barelays Bank	5
ABN Amro Bank	28	Bank of Tokyo Mitsubush	3
Deutsche Bank	11	신한은행	2
BNP Paribas	8	기타	25
Bank of Nova Scotia	5	전체	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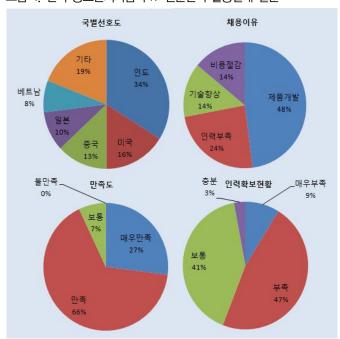
주: 2008년 3월 기준. 자료: 인도중앙은행.

- 우리나라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인도 진출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전망임.
- 반경쟁 관행 방지 및 경쟁보장, 상호접속 보장 등 통신규범 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규제 투명성, 예측가능성 제고 등 의 효과가 발생할 것임.
- 하지만 인도 측의 높은 외국인 지분규제 및 인허가의 어려움, 이미 가열되어 있는 시장경쟁, 그에 따른 투자비의 증가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 진출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움.
- 또한 인도의 통신산업 여건상 인도 기업의 우리시장 진입이 어려워 국내시장 투자규모 확대, 이에 따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및 소득증가 효과 등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됨.
- 인력이동의 양허로 인도 독립전문가 유입이 촉진될 경우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인도 IT 소프트웨어 분야 전문가들의 국내유입 증가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제품개발 및 품질, 가격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글로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IT벤처 및 중소기업들은 인도인 전문가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채용만족도도 높음(그림 6 참고).
- 지난 2007년까지 입국한 인도의 IT 전문가들은 약 1,400명
 으로, 이 중 IT Card로 입국한 인도인만 706명으로 추산됨.
- 인도 독립전문가의 유입 급증으로 국내 노동시장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불법체류 등 문제 발생 시 서비스계약을 법인으로 한정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한·인도 CEPA 협정문 내 포함되어 있으며, 이밖에 자격요건 강화, 유입인력 할당(쿼터), 비자형태 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인력유입을 제한할 수 있음.
- 완화된 입국 조건으로 단기 유입급증 현상이 나타날 수 있 겠지만, 국내 수요기업이 기술력이 높은 전문가 채용을 원 하고 있고, 이들 또한 최소한 대학 졸업 이상의 전문인력들 이므로 사회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4.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IT 전문인력 활용실태 설문



자료: IT벤처기업연합회소속 105개 회원사 대상 설문조사(2008년).

4. 활용 및 대응 방안

가. 한·인도 CEPA의 활용방안

- 1) 인도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계기 및 지원 강화
- 한·인도 통상관계가 2000년 이후 급속도로 진전되었지만 경쟁국에 비해 현재까지는 미진한 상태이므로 한·인도 CEPA는 이를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함.
- 인도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은 2003년 3.6%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2.8%를 기록하는 데(12위) 그침, 반면 중국은 2008년 10.3%로 2004년 이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2009년 5월까지 우리나라의 대인도 직접투자 누적금액은 4.7억 달러로 싱가포르의 80억 달러, 일본의 28억 달러 등에 비해 크게 부족함(인도정부 통계 기준).

그림 5. 인도 수입시장의 주요국 점유율 비교



자료: 한국무역협회; KITA net

-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대인도 통상정보 제공 확대 및 지원 인프라 강화가 필요함.
- 한 · 인도 CEPA 체결로 향후 대인도 교역 및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기업들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임.
- 인도 현지에 설치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의 역할, 수출인 큐베이터 사업 등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 추진 중인 한국기 업전용공단도 조기 완공해야 할 것임.

- 한·인도 CEPA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한 인도시장 진출 지 원 강화
- 관세 철폐 및 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자동차 부품, 전자 제품, 기계 등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상담회 및 구매전략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기업들이 인도의 부품 아웃소싱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함.
- 2) 산업기술 협력 및 인력활용 확대
- 인도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활용전략 수립
- 우리 중소기업들이 인도의 고급기술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로드쇼 등을 개최하여 인도 전문인력 들이 강점을 보이는 IT 및 BT 분야 우수인력 확보를 검토 해야 함.
- 한편 인도 인력의 유입급증으로 인한 노동시장 교란 및 사회문제화에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한·인도 간 산업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 한 · 인도 투자촉진협의회, 한 · 인도 경제공동위 등 양자간 협력채널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투자, 에너지, 산업, 표준공조 등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며 경제협력을 증진시킬필요가 있음.
- 3) 한인도 CEPA의 활용 및 피해구제 지원 서비스 확대
- 한·인도 CEPA의 무역구제 완화조치 적극 활용
- 최소부과원칙, 제로잉 금지,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인도의 반덤핑 관세부과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표 11. 對한국 반덤핑 조사개시 및 조치 발동 건수

(단위: 개)

조사개시 및		인도		미국		EU		중국		전 세계	
조치발동	국	조사	발동	조사	발동	조사	발동	조사	발동	조사	발동
건수		44	30	29	12	27	12	27	20	252	150

주: 1995년부터 2008년 말까지 건수. 자료: WTO

- 우리나라 기업의 한·인도 CEPA 활용 극대화를 위한 교육프 로그램 확대
- 우리업계가 한 · 인도 CEPA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관세철폐 스케줄 및 원산지기준, 증명서 발급방법, 투자 및 인력이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함.
- 주요 FTA 원산지증명 사례별 원산지 실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여 무역협회 등에서 원산지증명 교육을 확대 추진해야 함.
- 이와 함께 인도 수입업자들을 위한 인도 현지 홍보전략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무역조정지원제도, 사업전환지원제도 등을 통해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발생할 피해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업 구제 서비스 강화
- 특히 섬유산업은 대인도 수입 급증의 가능성이 높아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제너릭(복제약) 의약품 부문에서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도 기업들이 많아 수입 급증 및 인도기업의 국내 진출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나. 향후 과제 및 대응

■ 조기발효 필요

- 인도는 이미 의회의 승인을 마친 상태라 추가 절차가 불필 요하며, 우리나라의 국회비준만 통과되면 조기발효가 가능 한 상태임.
- 한 · 미 FTA의 경우 체결 후 2년간 발효가 되지 않아 FTA의 활용 및 관련 업계의 사업전략 수립에 애로가 발생하였음.
- 한 · 인도 CEPA의 경우 관세인하 계획이 장기간에 걸쳐 있음을 고려, 발효시점을 한시라도 앞당기는 것이 선점효과를 극대화 하는 한 방법이 될 것임.
- 현재 인도와의 FTA 협상 중에 있는 경쟁국보다 한발 앞서
 CEPA 협상을 마무리지은 시점에서 시장선점 효과를 극대
 화 하기 위한 조기발효가 필요함.

- 중·칠레 및 일본·칠레 FTA 발표 후 칠레 시장에서 우리 나라 상품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선례가 있음.
- 인도의 CEPA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제대로 이행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인도는 국토가 매우 넓고 각 주정부의 행정능력이 상이하여 통관 등 과정에서 CEPA 이행이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이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를 즉각적으로 조정하고 올바른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우리정부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한·인도 CEPA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부문에 대한 보 완 및 대응전략 강구가 필요함.
- 상품부문에서 빠진 최혜국대우, 서비스부문에서의 최혜국대우 의무 제외, 인정부문에서의 실질적 추진 메커니즘 결여 등은 현재 추진 중인 인도와 다른 국가들의 FTA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일본·인도 CEPA 협상 진전 내용 등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에는 재검토(review) 조항 등의 적 극 활용을 통해 신흥거대시장인 인도에서의 선점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KIEP